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등〉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72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유상범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11. 21.
3. 회 부 일: 2024. 1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로써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제도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자격 규정에 의존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임.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기본계획·도입규모·허용업종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협의체 설치·운영,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

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및 예산지원, 제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련 정책협의체 설치·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및 예산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의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등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내용임(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u>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도입·체류 등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u> ② <u>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③ <u>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고,</u>

	<u>전문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u> ④ <u>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u>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에 관한 사항</u> 2. <u>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u> ⑤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⑥ <u>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u> ⑦ <u>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략) <u><신설></u>	제94조(벌칙) ----- -----. 1. ~ 11. (현행과 같음) <u>11의2. 제19조의5제7항에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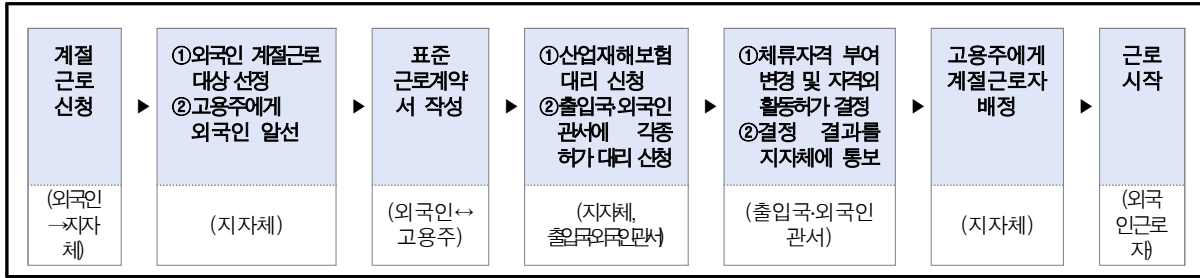
	<u>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u>
12. ~ 20. (생략)	12. ~ 20. (현행과 같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임.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¹⁾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구분 시행되고 있음.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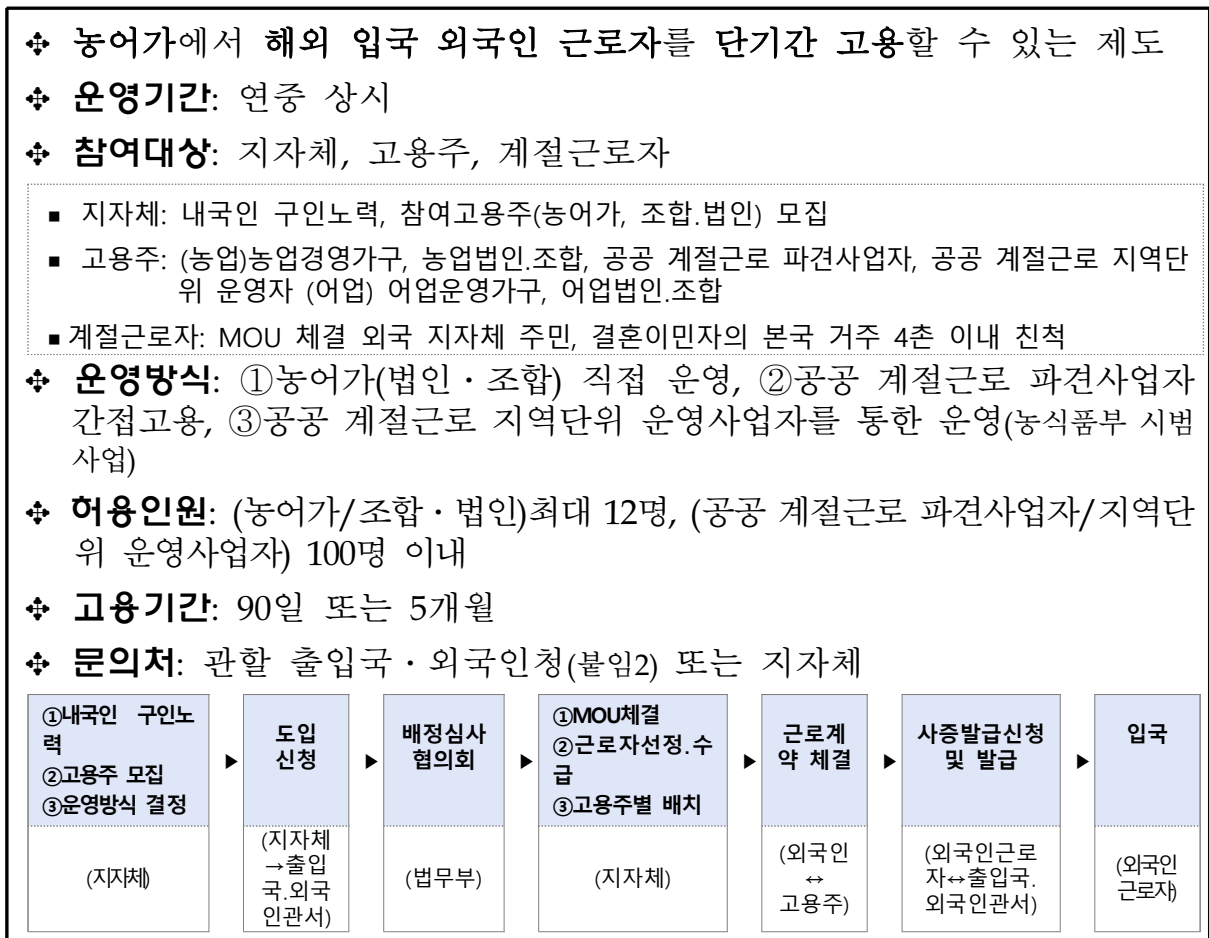
❖ 농어가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운영기간: 연중 상시
❖ 참여대상: 계절근로자, 고용주
■ 계절근로자: 동반(F-3), 방문동거(F-1), 선순환 자진출국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1) 자격소지자, 비취업 서약한 방문취업(H-2), 유학(D-2, D-4),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등록한 외국인,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간 유예 상태인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G-1)를 받은 미얀마인 또는 아프간인 등 ■ 고용주: 농·어업경영가구, 법인·조합,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 허용인원: (농어가/조합·법인) 최대 12명,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100명 이내
❖ 고용기간: 최소 1주일
❖ 문의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지자체

1) 김희숙·김주영·임성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22.6.



※ 자료 : 고용노동부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자료 : 고용노동부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외국인은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의 경우 계절근로 참여 요건²⁾을 갖춘 국내 체류 외국인, ‘해외 입

2) 계절근로 참여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질 것을 요함.

국 외국인 계절근로'의 경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농·어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임.³⁾

농업 분야의 경우 시설원예·특작, 일반채소, 과수, 버섯, 인삼, 곡물 관련 업무에 허용하고, 어업 분야의 경우 육상 가공·생산되는 해조류와 어패류 중 일부 수산물⁴⁾ 등 계절성으로 단기간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에 허용되며,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연 2회 개최되어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등을 최종 확정함.

2024년 배정심사협의회 결과 총 136개 지방자치단체에 계절근로자 77,268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136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74,689명이 배정된 상황임.

[연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도	신 청		배 정		운 영		이 탈		
	지자체	인원수	지자체	인원수	지자체	인원수	지자체	인원수	이탈률
2017	24	2,243	23	1,547	21	1,085	6	18	1.7%
2018	44	4,229	44	3,655	42	2,824	18	100	3.5%
2019	54	5,267	54	4,211	50	3,497	8	57	1.6%
2020	60	6,076	58	5,806	25	223	0	0	0
2021	42	7,340	42	7,340	44	1,850	5	316	17.1%

3) 고용노동부,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문, 2022. 4. 1.

4) 김 건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 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등이 해당됨.

2022	115	19,975	114	19,718	104	12,027	45	1,151	9.6%
2023	132	41,245	132	40,647	130	32,837	67	925	2.8%
2024	136	68,150	136	67,778	135	57,269	60	584	1.0%
2025	136	76,956	136	74,689	-	-	-	-	-
합계	-	231,481	-	225,391	-	111,612		3,151	2.8%

※ 자료 : 법무부

또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국내 체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인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⁵⁾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일반연구비, 260-01목), 자산취득비(430-01목)가 각각 9억 6,100만원, 15억 4,100만원 편성되었음.⁶⁾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 일반연구비(260-01)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ISP 수립 : 11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개발비 : 961,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HW/SW : 1,541,000천원

※ 자료 : 법무부

이와 같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

5)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도입-체류-귀국 전 단계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지원, 기관간 데이터 공유 및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임.

6) 해당 예산은 2024년도부터 편성되었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ISP 수립을 위하여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자격 규정과, 내부지침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

단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5.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20의2. 계절근로(E-8)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⁷⁾에 따르면, 농·어가와 농·어가인구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또한 가속되고 있는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농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경영주의 연령도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7.8%로 가장 높았음.

7)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어번기의 인력난 해소 목적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 및 향후 농·어촌 지역의 저출생·고령화 현상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이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됨.

구체적으로, (1)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 규모 등 결정을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두는 내용(안 제19조의5제2항)과 관련하여, 기존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짐.

(2) 법무부장관이 외국과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19조의5제3항부터 제5항)과 관련하여, 현행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사업 지원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⁸⁾

8)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사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사업 지원
6.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

다만, 개정안 제19조의5제3항이 전문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인바, 유사입법례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1조제4항부터 제6항)의 경우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의 사유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처분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명령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명확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9조의5제7항, 제94조제11의2호 신설)과 관련하여,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인바,⁹⁾ 현행법상 동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권고’, 한겨레, [단독] 월급 206만원, 실수령 35만원…외국인 노동자 울리는 브로커, 2024. 10. 30, 최종검색일: 2025. 1.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4917.html

문 의 처
02)6788-5053